



LEGAL UPDATE

금융규제

Sep. 2023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금융감독당국이 내부통제에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 등은 2023. 9. 11.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금융감독당국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의 관점에서,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I.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의 내용

1.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향은, 금융회사는 스스로 각 경영진별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사전에 확정하기 위하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제30조의3을 신설하여 대표이사등(대표집행임원 및 대표자 포함)이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임원에게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책무구조도에는 ① 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반드시 존재할 것, ② 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복수로 존재하지 않을 것, ③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책무의 종류, 책무구조도의 작성방법, 제출방법 및 정정요구 등의 구체적 내용은 고시에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해당임원의 책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현행 소극적 결격요건 외에 책무수행의 적극적 요건(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신뢰성 등)을 신설하고(안 제5조 제3항), 금융회사에게 임원의 신규 선임시뿐만 아니라, 책무구조도상 직책 변경 시 등에도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안 제7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대형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는 시행 후 1년, 대형보험회사는 시행 후 1년, 그 외 기타 금융회사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전까지 최초로 작성한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안 부칙 제6조).

2.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개정안에 의하면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하며, 임원과 대표이사등은 관리조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사항을 각각 대표이사등과 이사회에 보고하고, 관리조치와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안 제30조의2, 제30조의4).

▪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안 제30조의2 제1항)

- ①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 ② 내부통제기준 등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 ③ 임직원이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 ④ 점검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기준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
- ⑤ 위에 준하는 조치로서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

▪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안 제30조의4 제1항)

- ① 내부통제등 정책·기본방침 및 전략의 집행·운영
- ② 임직원이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및 그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 ③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사실을 대표이사등이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보·신고 및 보고 등에 대한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 ④ 각 임원이 관리조치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 ⑤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 ⑥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또는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⑦ 관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
- ⑧ 그 밖에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위와 같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로 정한 조치를 (실효성 있게)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대표이사등에 대해서는 신분제재를 부과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안 제35조의2).

3. 이사회내 내부통제 역할 명확화

나아가 개정안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전략, 임직원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요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15조, 제16조, 제22조의2).

한편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정관에 반영해야 하므로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부터 적용되고(안 부칙 제3조),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설치해야 합니다(안 부칙 제4조).

4. 제재 및 면책기준

개정안은 앞서 규정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제재의 수준은 위반행위의 발생 경위와 정도 및 그 결과, 위반행위의 발생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제재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 제재 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5조의2).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배분 여부, 예산과 인력의 투입 수준, 내부통제 관련 정기적 감사 업무 여부, 문서기록의 관리 유지, 감독당국과 정보 교환 및 협조 수준 등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당국이 2023. 6. 발표한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입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칙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책무구조도 도입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며, 임원 및 대표이사등에 대해서는 관리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되므로 이에 따른 조직 및 내규의 개편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사고 발생 시 개별적인 위반이 아닌 “시스템(구조)적 실패(systemic failure)”로 평가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제도 구축 단계에서부터 빈틈없는 설계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책무구조도상 임원에게 의무적으로 배분할 업무 영역 및 책무구조도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므로 향후 시행령 및 금융위 고시 등 입법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III. 금융권 내부통제 관련 화우의 전문성

법무법인(유) 화우는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은행들의 DLF제재 관련 행정소송에서 은행들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의 입장과 한계, 금융권 내부통제의 개선방향 등에 관하여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사모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대다수 제재사건들에 있어 주요 논리를 개발하고 금융감독당국을 설득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적용대상 금융회사들에 공통되는 ‘내부통제기준 핵심사항 구체화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 제도개편에 따른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점검과 관련해서도 주요 금융사들에 자문을 제공하는 등 선제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연구 및 검토를 계속해 나가고 있으며, 금융권 내부통제 관련 자문 및 규제대응에 최적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무법인(유) 화우의 금융규제팀은 전영역의 금융회사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이승희

대표변호사

T. (+82) 2 6003 7507

E. shlee@yoonyang.com

이주용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46

E. jylee@yoonyang.com

정현석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047

E. hsjung@yoonyang.com

허환준

파트너변호사

T. (+82) 2 6182 8394

E. hjheo@yoonyang.com

황혜진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085

E. hjhwang@yoonyang.com

제옥평

파트너변호사

T. (+82) 2 6182 8360

E. opje@yoonyang.com